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18가합420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D

7.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C

8. H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양종윤

변론 종결2022. 6. 23.

판결 선고2022. 10. 13.

주 문

1. 가. 피고 A과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45.566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1,089,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1,421,0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4.0656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8.904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837,557,1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837,557,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C과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4.4120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9.0400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863,422,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863,422,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D과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13.6069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4.003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919,145,9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919,145,9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E과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12.6938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5.075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955,378,4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955,378,4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F와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4.7078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18.545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1,089,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F는 원고에게 1,421,0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가. 피고 G와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10.1110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35.8841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1,089,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G는 원고에게 1,421,0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가. 피고 H와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4.8366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18.545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1,089,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H은 원고에게 1,421,0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9.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I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2) 피고 A은 I의 딸, 피고 B은 I의 손자, 피고 C은 I의 손녀, 피고 D은 I의 손자 며느리, 피고 E은 I의

손녀사위, 피고 F, H은 I의 증손자, 피고 G는 I의 증손녀이다.

나. I의 이혼과 재산분할 및 I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I은 1954. 3. 1. J와 혼인하였다가 2015.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호482호 사건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2015. 3. 27. 이혼하였다. 원고는 J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산을 이전받았다.

1	2015. 4. 14.	서울 강북구 K	토지/건물
2	2015. 4. 17.	서울 용산구 L	토지/건물
3	2015. 5. 14.	M은행	예금
4	2015. 6. 30.	계좌이체	현금

2) 그런데 I은 이혼 후에도 J와 생계를 함께 하였고, 원고 산하의 서초세무서장은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라고 보아, 2017. 11. 28. I에게 2015. 4. 14.자 증여분 2,316,213,953원, 2015. 4. 17.자 증여분 6,251,942,426원, 2015. 5. 14.자 증여분 2,636,771,462원, 2015. 6. 30.자 증여분 2,229,764,108원 등 합계 13,434,691,93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I은 위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7. 11. '서초세무서장이 2017. 11. 28. I에게 한 당초 부과처분은 협의이혼 당시의 I 및 배우자의 자산·부채 현황, I이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I이 취득할 재산분할 대상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4)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진행한 후 2019. 9. 9. 당초 부과처분 중 2015. 4. 14.자 증여분, 2015. 5. 14.자 증여분, 2015. 6. 30.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5. 4. 17.자 증여분 증여세 6,251,942,426원을 2,167,090,86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5) 위 감액경정된 증여세에 대하여도 I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408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누40166호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268호 판결로 각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위 2,167,090,866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6) I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여 증여세 1,421,089,05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다. I의 부동산 증여

1) I은 2016. 12. 12. 서울 용산구 L대 661.2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 강북구 K 대 596.1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이어서 I은 2016. 12. 15. K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84783호로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6. 12. 19. L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84783호로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I은 2016. 12. 12.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빌라 P호 내지 Q호의 총 12호(이하 'R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2016.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38616호, 제38617호, 제38618호, 제38619호, 제38620호, 제38621호, 제38622호, 제38623호, 제38615호로 별지 목록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I이 2016. 12. 12. L 부동산, K 부동산, R동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8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국세기본법 21조 제2항은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I은 2015. 4. 17. 과도한 재산분할로 증여를 받아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으로, 사해행위일인 2016. 12. 12. 이전 이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2) 증여세 납세의무가 2015. 4. 17.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I에 대한 증여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I이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2016. 12. 12. 당시는 이미 2015. 4. 17. 과도한 재산분할을 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였고, 과도한 재산분할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7. 11. 28. 이에 기하여 서초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I에 대한 증여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2016. 12. 12. 이 사건 증여로 동시에 자신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 전부를 피고들에게 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2,187,090,866원)이 적극재산(919,575,108원)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된다.

적극 재산	부동산	L 부동산	7,303,160,840	갑 제8호증
K 부동산	4,606,006,580	갑 제8호증		
금융	서울특별시 용산구 N O 빌라 P호 내지 Q호(총	3,543,000,000	갑 제8호증	

적극 재산	부동산	L 부동산	7,303,160,840	갑 제8호증
	12호)			
금융자산	919,575,108	갑 제12호증		
소계	16,371,742,528			
소극 재산	조세채무	2,167,090,866	갑 제14호증	
금융채무(M 은행)	20,000,000	갑 제12호증		
소계	2,187,090,866			
순자산	14,184,651,662			

이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역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가액반환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 부동산과 L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일인 이 사건 증여일 2016. 12. 12. 이후 각 선의의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K 부동산과 L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된 K 부동산과 L 부동산의 공동담보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가액반환 범위 가)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 그리고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의할 때,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 부동산과 L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가액은 아래 표의 '기준시가'란 기재와 같고, 원고는 앞서 인정한 피보전채권액인 1,421,089,050원의 범위와 피고들이 각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그 금액은 아래 표의 각 '안분가액' 해당란 기재와 같다.

A	45.5663 /100	2,098,786,776			2,098,786,776
B	4.0656 /100	187,261,804	8.9043 /100	650,295,351	837,557,154
C	4.4120 /100	203,217,010	9.0400 /100	660,205,740	863,422,750

A	45.5663 /100	2,098,786,776			2,098,786,776
D	13.6069 /100	626,734,709	4.0039 /100	292,411,257	919,145,966
E	12.6938 /100	584,677,263	5.0759 /100	370,701,141	955,378,404
F	4.7078 /100	216,841,578	18.5459 /100	1,354,436,906	1,571,278,484
H	4.8366 /100	222,774,114	18.5459 /100	1,354,436,906	1,577,211,020
G	10.1110 /100	465,713,325	35.8841 /100	2,620,673,539	3,086,386,864

3) 소결론 따라서 ① 피고 A과 I 사이에 K 부동산 중 100분의 45.566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1,089,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과 I 사이에 K 부동산 중 100분의 4.0656 지분 및 L 부동산 중 100분의 8.904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837,557,1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C과 I 사이에 K 부동산 중 100분의 4.4120 지분 및 L 부동산 중 100분의 9.0400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863,422,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과 I 사이에 K 부동산 중 100분의 13.6069 지분 및 L 부동산 중 100분의 4.003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919,145,9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E과 I 사이에 K 부동산 중 100분의 12.6938 지분 및 L 부동산 중 100분의 5.075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955,378,4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F와 I 사이에 K 부동산 중 100분의 4.7078 지분 및 L 부동산 중 100분의 18.545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1,089,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G와 I 사이에 K 부동산 중 100분의 10.1110 지분 및 L 부동산 중 100분의 35.8841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1,089,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H과 I 사이에 K 부동산 중 100분의 4.8366 지분 및 L 부동산 중 100분의 18.545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421,089,0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②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A은 1,421,089,050원, 피고 B은 837,557,154원, 피고 C은 863,422,750원, 피고 D은 919,145,966원, 피고 E은 955,378,404원, 피고 F는 1,421,089,050원, 피고 G는 1,421,089,050원, 피고 H은 1,421,089,0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박태일

판사조수진

판사오민관

별지